

**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유승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5. 1.

발 의 자 : 유승희 · 이개호 · 인재근  
이미경 · 박홍근 · 강동원  
김성곤 · 김광진 · 박남춘  
백재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면 아니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망 중립성과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망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(m-VoIP)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,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.

이에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

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
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 
권익을 향상시키는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 
것임(안 제33조의2 신설).

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고시 등)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 
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 
정보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 과  
부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  
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
그리하지 아니하다.

1. 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(이하 “콘텐츠등”이라  
한다)를 차단하는 행위
  2. 정보통신망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는  
행위
  3. 콘텐츠등의 유형,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  
게 차별하는 행위
-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  
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, 이용 가  
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

제1항제3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고시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, 조건, 절차,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3조의2(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고시 등)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(이하 “콘텐츠 등”이라 한다)를 차단하는 행위</u></li> <li><u>2. 정보통신망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는 행위</u></li> <li><u>3. 콘텐츠등의 유형,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</u></li> </ol> <p><u>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</u></p>

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,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고시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, 조건, 절차,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